투자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4431)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3. **판 매 회 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2025년 03월 0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05월 1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18년 02월 26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자산운용

[목 차]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중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주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므로 외화표시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 자산이 “KB스타 막강 단기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 및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가 주된 운용전략이나, 이와 유사한 전략의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존재하지 않아, 자동 전환되는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를 가격 변동성이 낮은 단기 채권형 모집합투자기구로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금의 효율적인 인출 및 보존 등을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하여 설계한 자산배분모델을 활용하여 채권 및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주기적 분배금 지급 및 효율적인 잔존자산 보존이 가능하도록 투자전략을 수행하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전략은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이 투자신탁을 활용하여 사전 자동환매약정 등을 맺은 뒤 정기적으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월지급식 방식은 사전에 정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운용성과 또는 자동환매약정 금액의 규모 등에 따라 지급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모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투자자의 투자금액 기준 수익률과는 크게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C4431]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70%이상을 채권 및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재간접 투자위험 및 ETF 투자위험, 자산배분모델 활용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수행에 따른 투자 위험, 해외 자산 투자에 따른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설계한 자산배분모델 등을 통해 채권 및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하되,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채권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국내외 주식 관련 자산에도 20% 수준으로 조절하여 투자합니다. - 모투자신탁은 외화표시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 외화표시 자산의 표시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50%이내	0.375	0.180	0.870	0.422	93	138	185	286	5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715	0.520	1.210	0.762	78	159	244	425	950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25%이내	0.285	0.090	0.580	0.332	59	95	132	212	4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455	0.260	0.760	0.502	51	105	161	282	635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A-E 클래스와 C-E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1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33-p.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024/03/07 ~ 2025/03/06	최근 2년 2023/03/07 ~ 2025/03/06	최근 3년 2022/03/07 ~ 2025/03/06	최근 5년 2020/03/07 ~ 2025/03/06	설정일이후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2018-03-07	6.08	6.51	1.42	1.36	2.34
수익률 변동성	2018-03-07	4.00	4.04	5.05	5.72	5.19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				운용경력년수
			펀드수(개)	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주형준	1977년	책임	50	22,421	11.09	28.74	12.05	29.17	18년 1개월
정찬규	1981년	부책임	61	42,354	11.58	29.64			16년 8개월
전연경	1994년	부책임	49	22,284	-	-			7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등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재간접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여 해당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입과 환매시에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에서 실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에 반영되는 시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부도 등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권리행사 요구 및 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피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 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주식,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

	자산배분 전략 수행에 따른 투자 위험	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노후자금의 효율적인 인출 및 보존 등을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들의 비중을 조절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투자신탁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고, 잔여 자산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송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로부터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관련 투자위험	투기등급 채무증권은 '정크본드(junk bond)'라 하며, 투자적격 등급의 채무증권보다 원금 손실 위험이 더 크다고 여겨지며, 발행회사의 원금 지급 능력 면에서 상당히 투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증권입니다. 이러한 투기등급 채무증권은 경제조건 악화나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이 투자적격 등급 채무증권에 비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증권은 일반적으로 경제상황 악화시기에는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더 높은 투자손실위험(시장, 신용, 유동성 위험 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당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헤지는 해당 통화관련 선물 및 선물환 등을 활용하여 헤지할 예정이나 헤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선물환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위험 관리전략: 모투자신탁은 외화표시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 외화표시 자산의 표시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목표 헤지비율: 최소 80%, 최대 100% 수준

매입방법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방법	17시 이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시 경과 후: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 ·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계좌 · 클래스 · 펀드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kbam.co.kr)		
모집기간	2018년 02월 26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모집 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5년 05월 15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46~p.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12">집합투자기구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td></tr>
<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 rowspan="4">판매 경로</td><td>수수료 후취(S)</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온라인(E/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슈퍼(S)</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관련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5">기타</td><td>무권유 저비용(G)</td><td>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기관(F)</td><td>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이나,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td></tr>
<tr><td>랩,금전신탁 (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 (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 (퇴직)</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able>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나. 종류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C4432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4435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4433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4436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443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U148
A-E	수수료선취-온라인	DU149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DU15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DU151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DU152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DU154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DU155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DU156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DU15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1)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투자신탁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1좌=1원, 원본액 기준)

※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이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2018년 02월 26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모집장소:**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

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나. 종류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C4432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4435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4433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4436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443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U148
A-E	수수료선취-온라인	DU149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DU15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DU151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DU152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DU154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DU155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DU156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DU15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 짜	주 요 내 용
2018.03.07	최초설정
2018.04.23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혜미/최영완 → 김세희/최영완)
2019.05.17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세희/최영완 → 김세희/김민규)
2019.09.25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및 한글 클래스 명칭 부기 반영
2020.05.22	투자신탁명칭 변경[KB 온국민 평생소득 R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021.12.31	투자자문업자 뱅가드(Vanguard)와의 투자자문계약(최초설정일부터 2021.12.31까지) 종료에 따른 해당 내용 삭제.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인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세희/김민규 → 김세희/장위식)
2022.05.12	A/A-E/A-G/C/C-E/C-G/C-F/C-W/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세희/장위식 →이동명/정찬규)
2023.05.2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동명/정찬규 → 정찬규)
2024.09.13	S/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정의 정정
2024.12.2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정찬규 → 정찬규/전연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

는 신탁계약서 상 정해진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5년 03월 07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				운용경력년수
			펀드수(개)	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주형준	1977년	책임	50	22,421	11.09	28.74	12.05	29.17	18년 1개월
정찬규	1981년	부책임	61	42,354	11.58	29.64			16년 8개월
전연경	1994년	부책임	49	22,284	-	-			7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성명	주요 운용경력
주형준	삼성선물 통화선물팀 1년 11개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A.I팀 5년 7개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해외재간접운용팀 4년 6개월 KB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본부 8년	정찬규	미래에셋생명보험 일반계정운용팀 3년 10개월 KEB하나은행 투자컨설팅부 6년 5개월 KB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본부 6년 5개월
전연경	한국씨티은행 투자상품부 3년 8개월 국민은행 WM상품부 6개월 신한투자증권 포트폴리오전략부 1년 10개월 KB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본부 7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멀티에셋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가 약정된 투자신탁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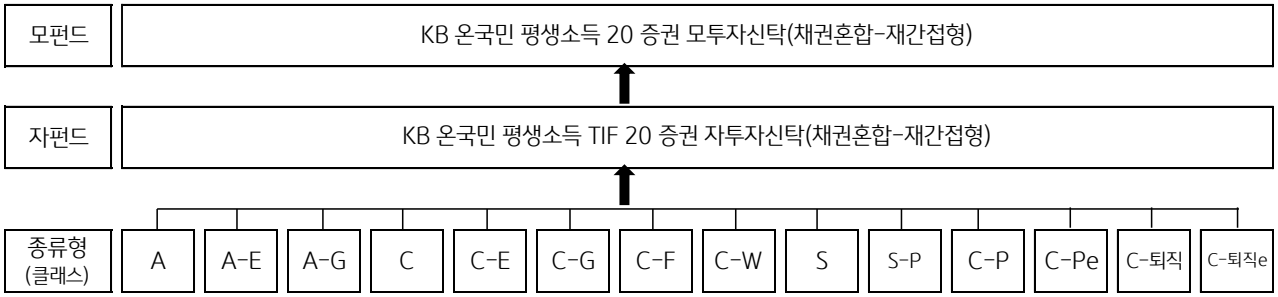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클래스)		투자신탁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1년 6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1년 6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수수료 후취(S)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관련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이나,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랩,금전신탁(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퇴직연금(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연, %)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50%이내	-	-	0.180	0.150	0.030	0.015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온라인 가입	납입금액의 0.25%이내	-		0.090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회사 등 투자권유 없이 가입	납입금액의 0.35%이내	-		0.125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제한없음	-	-		0.520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 가입	-	-		0.260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회사 등 투자권유 없이 가입	-	-		0.360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집합투자기구 및 전문투자자 등	-	-		0.030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	-		0.00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운용사 공동판매채널 온라인 가입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0.080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운용사 공동판매채널 온라인의 연금저축용	-	-		0.060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연금저축용	-	-		0.410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온라인 가입 연금저축용	-	-		0.205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퇴직연금용	-	-		0.360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온라인 가입 퇴직연금용	-	-		0.180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 요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신탁재산의 80%이상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등 70% 이상,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40% 미만, 채권 및 어음 각 40% 미만 등
	투자목적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자산배분모델 등을 통해 국내외 채권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국내외 주식 관련 자산에도 20% 수준으로 병행 투자 -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표시 통화에 대한 환헤지 전략 실시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채권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도 20% 수준으로 병행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외화표시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 외화표시 자산의 표시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동성 부족 및 대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에 인해 환헤지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80%이상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
②	유동성자산 등	20%이하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③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집합투자증권 등	70%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주식 및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미만으로 함 - 채권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5%이하로 함. 이 경우 투자적격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함
②	주식 및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40%미만	주식: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채권	4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어음	40%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⑥	장내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⑦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⑧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⑩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⑪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신탁계약서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채권 및 어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③ 및 ⑤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 운용,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증권의 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증권의 대여: 수수료 수취를 통한 수익률 증진, 매매 편의성 증대(ETF에 해당되는 경우로, ETF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하므로 시장조성자들은 호가 수량 확대 및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할 수 있음) 등

나. 증권의 차입: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

나. 투자제한

▣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①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투자신탁(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투자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의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외국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상장지수투자신탁과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투자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마.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투자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①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사모투자신탁(사모투자신탁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①~③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①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①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회사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적용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유예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이 상이한 다수의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전략을 반영하는 적절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이 특정지수를 추종하거나 초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임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설계한 자산배분모델 등을 통해 채권 및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채권 관련 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고 국내외 주식 관련 자산 등에도 20% 수준으로 조절하여 투자합니다. 3) 이 투자신탁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전세계 다양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지수(Index) 등을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인덱스 펀드, ETF 등)들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섹터, 스타일, 크레딧, 부동산(리츠포함)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예시>

자산군	펀드명	주요내용
주식	Vanguard Global Stock Index	- 등록지 / 법적형태: 아일랜드 / UCITs,회사형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MSCI World NR USD
	Vanguard Total Stock Market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CRSP US Total Market TR USD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Stock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FTSE Global All Cap ex US NR USD

	Invesco BuyBack Achievers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NASDAQ US Buyback Achievers TR USD
	iShares MSCI EAFE Value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MSCI EAFE Value NR USD
	iShares MSCI Australia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MSCI Australia NR USD
	JPMorgan BetaBuilders Canada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Morningstar Canada Time NR USD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FTSE High Dividend Yield TR USD
기타	iShares Global REIT ETF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FTSE EPRA Nareit Global REITS NTR
채권	Vanguard Total Bond Market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Bloomberg US Agg Float Adj TR USD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Bond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Bloomberg Global Agg Float Adj RIC TR Hedged USD
	Vanguard Short-Term Corporate Bond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Bloomberg USD Corp Bond 1-5Y TR USD
	iShares Floating Rate Bond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Bloomberg US FRN 5-Y TR USD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Bloomberg US Credit Corp 5-10Y TR USD
	SPDR Bloomberg Short Term High Yield Bond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Bloomberg US HY 350mn CP 0-5Y 2% TR USD
	SPDR Blackstone Senior Loan	- 등록지 / 법적형태: 미국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Markit iBoxx USD Liquid Leveraged Loan TR
	iShares China CNY Bond	- 등록지 / 법적형태: 아일랜드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Bloomberg Barclays China Treasury + Policy Bank TR CNY

	VanEck JPMorgan EM Local Currency Bond	- 등록지 / 법적형태: 아일랜드 / ETF - 표시통화: USD - 벤치마크: JPM GBI-EMGlobal Core TR USD

※ 상기 포트폴리오는 최초 설정시점에 편입이 예상되는 펀드를 표기한 것으로 투자대상 자산군은 시장상황, 투자 모델 및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기구가 청산 및 해산 되는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운용성과 부진 및 잠정판매중단 등의 사유 발생 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교체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의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집중 투자하여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장상황 등에 따라 상기 포트폴리오 상 편입 펀드는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을 재산정 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피투자펀드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 외화표시 자산의 표시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동성 부족 및 대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에 인해 환헤지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이 상이한 다수의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전략을 반영하는 적절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이 특정지수를 추종하거나 초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이 "KB스타 막강 단기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 관리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위험 관리전략
1) 담당 운용부서에서 운용정책, 투자전략, 자산배분 및 투자한도 등을 수립합니다. 2) 환위험 관리전략: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외화표시 자산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동성 부족 및 대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에 인해 환헤지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 방법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미달러(USD) 및 유로(EUR) 등]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최소 80%에서 최대 100% 수준까지 해당 외화표시 자산 통화 관련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 변동 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 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설정 초기 등 일정기간 설정액이 환헤지 거래가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 환헤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표시 통화에 대해서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표시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환헤지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와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의 표시통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 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다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환헤지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손실이 발생하나 외화자산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펀드 수익률은 환율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률이 환율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투자신탁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환헤지 비용

목표 헤지비율	환헤지 비용
외화자산의 최소 80%, 최대 100% 내외	-

주1) 환헤지 비용 및 효과는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헤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채권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도 20% 수준으로 병행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외화표시 자산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동성 부족 및 대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에 인해 환헤지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관련 자산(REITs포함)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ITs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로 투자 부동산의 가격 하락 및 상장되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시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집합투자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계산은 국내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를 수 있어, 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금융파생상품 등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표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 환위험 관리전략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선물·선물환 등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위험 제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환헤지 대상 자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헤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자산 중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와 다른 통화표시 자산에 대해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와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의 표시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헤지를 실시하더라도 다양한 변수로 인해 100% 완전헤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주식,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 전략 수행에 따른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노후자금의 효율적인 인출 및 보존 등을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들의 비중을 조절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투자신탁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입과 환매시에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에서 실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에 반영되는 시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부도 등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권리행사 요구 및 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피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고, 잔여 자산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송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로부터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관련 투자위험	투기등급 채무증권은 '정크본드(junk bond)'라 하며, 투자적격 등급의 채무증권보다 원금 손실 위험이 더 크다고 여겨지며, 발행회사의 원금 지급 능력 면에서 상당히 투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증권입니다. 이러한 투기등급 채무증권은 경제조건 악화나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이 투자적격 등급 채무증권에 비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증권은 일반적으로 경제상황 악화시기에는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더 높은 투자손실위험(시장, 신용, 유동성 위험 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위험	증권 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매입 불가 위험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매입이 어려워질 경우 모집(판매)가 불가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대금결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거래부진,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 및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분산투자 등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투자신탁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의 원본액이 15억을 초과하지 못하여 투자대상 자산이 변경되거나, 정기적인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투자자들의 자동환매약정 금액으로 투자신탁이 소규모화 되는 경우 등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산출한 값(97.5% VaR*)이 10.32%로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채권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20% 수준으로 병행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하락과 환율변동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 수단입니다. 상기 VaR 값(%)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약 1년 동안 최대 VaR 값(%)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산출한 97.5% VaR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97.5% VaR를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 97.5% VaR 모형: 과거 3년간 일간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60}$)를 곱해 산출

※ 이 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기준으로 판매회사의 등급 분류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펀드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함)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T)	제3영업일(T+2)	제4영업일(T+3)
17시(오후 5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선취판매수수료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50% 이내**

2)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25% 이내**

3) **A-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35% 이내**

4)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종류별 가입 요건

종류(클래스)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집합투자기구 및 전문투자자 등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전용으로 투자기간에 따라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및 사업자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4영업일(T+3)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T+7)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5영업일(T+4)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T+8)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T)	제4영업일(T+3)	제5영업일(T+4)	제8영업일(T+7)	제9영업일(T+8)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1)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대금의 0.15% 이내**

2)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4)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해 일부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날의 제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유동성 위험: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X	O	X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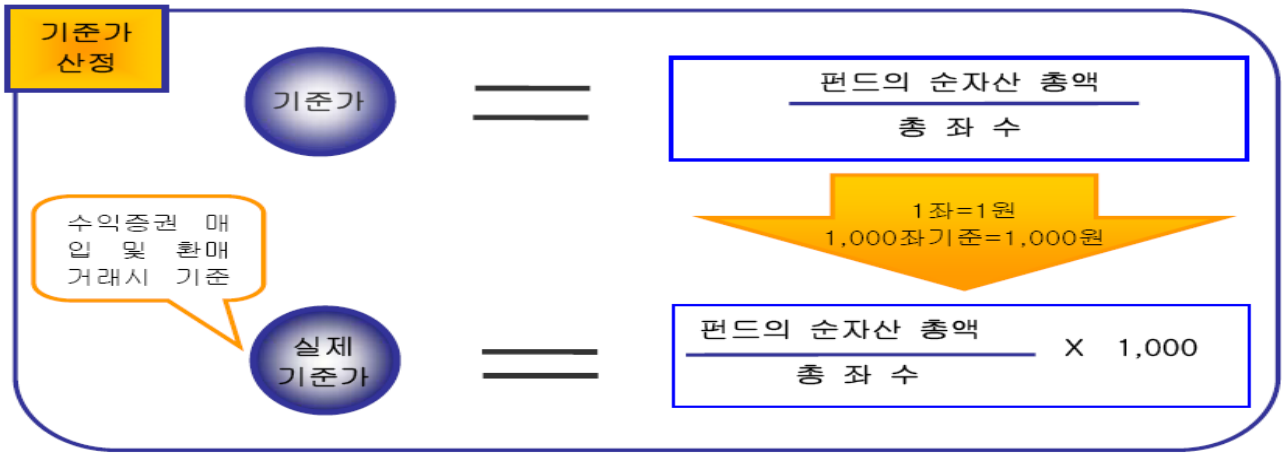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구분	평가기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취득한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국내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국내 비상장채권 (CP, CD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채무증권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파생결합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또는 계산대리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는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펀드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펀드가 거래되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운용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며, 해당 평가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클래스)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0.50% 이내	-	-	-
A-E	수수료선취-온라인	납입금액의 0.25% 이내	-	-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납입금액의 0.35% 이내	-	-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	-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금전신탁	-	-	-	-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	-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	-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투자신탁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A	0.150	0.180	0.030	0.015	0.375	-	0.375	0.870	0.422	-
A-E	0.150	0.090	0.030	0.015	0.285	-	0.285	0.580	0.332	-
A-G	0.150	0.125	0.030	0.015	0.320	-	0.320	-	0.367	-
C	0.150	0.520	0.030	0.015	0.715	-	0.715	1.210	0.762	-
C-E	0.150	0.260	0.030	0.015	0.455	-	0.455	0.760	0.502	-
C-G	0.150	0.360	0.030	0.015	0.555	-	0.555	-	0.602	-
C-F	0.150	0.030	0.030	0.015	0.225	-	0.225	-	0.272	-
C-W	0.150	0.000	0.030	0.015	0.195	-	0.195	-	0.242	-
S	0.150	0.080	0.030	0.015	0.275	-	0.275	-	0.322	-
S-P	0.150	0.060	0.030	0.015	0.255	0.000	0.255	-	0.302	0.011
C-P	0.150	0.410	0.030	0.015	0.605	0.002	0.607	-	0.654	0.010
C-Pe	0.150	0.205	0.030	0.015	0.400	0.001	0.401	-	0.448	0.010
C-퇴직	0.150	0.360	0.030	0.015	0.555	0.005	0.560	-	0.607	0.010
C-퇴직e	0.150	0.180	0.030	0.015	0.375	0.020	0.395	-	0.442	0.01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예시: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포함: 연 0.047%로 예상하여 적용)을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나눈 값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된 기타비용을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합산한 총 보수·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text{합성 총 보수·비용비율(모펀드 포함)} = \frac{(\text{자펀드 기타비용} + \text{모펀드 투자비율에 따른 기타비용}) + \text{자펀드 총보수}}{\text{순자산 연평균잔액}} \times 100$$

※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A-E 클래스와 C-E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예시: 증권·선물·옵션 등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증권거래비용	214

※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금융비용	-

※ 미설정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은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증권거래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은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2. 투자신탁재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정보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건당 결제 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보관비용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 부수비용(out 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해당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 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단위: 천원)

종류(클래스)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	128	170	260	52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3	138	185	286	583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4	85	117	186	38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9	95	132	212	447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8	102	138	215	44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3	112	153	241	501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3	150	229	399	8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8	159	244	425	950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95	146	256	57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1	105	161	282	635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7	116	178	311	7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2	126	193	337	757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	47	73	127	28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8	57	88	154	348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	41	63	110	2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	51	78	137	31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	5/8	89	155	3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3	68	104	182	411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	54	82	144	32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1	63	97	170	386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2	127	195	340	76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7	137	210	366	820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1	84	129	226	51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6	94	144	252	568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7	117	180	314	7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2	127	195	340	763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1	83	127	222	50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5	93	143	249	561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

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가로 환원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납입 가능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최대 6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또는 16.5%)로 세액공제 효과,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연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또는 15%(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분리과세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해지가산세	해당사항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해지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2%(또는 15%)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또는 16.5%)로 세액공제 효과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7기	제 6기	제 5기
	2025.03.06	2024.03.06	2023.03.06
운용자산	2,428,200,143	2,181,351,106	1,764,482,384
증권	2,404,415,373	2,157,035,397	1,741,095,78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3,784,770	24,315,709	23,386,59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8,978	13,979	11,482
자산총계	2,428,209,121	2,181,365,085	1,764,493,86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428,556	2,128,862	1,889,419
부채총계	2,428,556	2,128,862	1,889,419
원본	2,280,216,366	2,100,725,008	1,814,537,685
수익조정금	6,101,528	-18,417,510	11,011,985
이익잉여금	139,462,671	96,930,963	-62,945,223
자본총계	2,425,780,565	2,179,236,223	1,762,604,447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7기	제 6기	제 5기
	2024.03.07 ~ 2025.03.06	2023.03.07 ~ 2024.03.06	2022.03.07 ~ 2023.03.06
운용수익	130,709,124	134,382,589	-156,986,788
이자수익	630,461	662,548	473,93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30,078,663	133,720,041	-157,460,718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8,991,863	7,729,644	7,692,181
관련회사 보수	8,991,863	7,729,644	7,692,181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70,835	314,707	306,256
당기순이익	121,346,426	126,338,238	-164,985,225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당기 매매회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 되었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매매회전율	동종유형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주식 평균금액(B)	(A/B)	평균 매매회전율
-	-	-	-	-	-	32.06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기	제6기	제5기
증권대여 수익			
증권차입 비용			

주3) 기타비용에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자산별 거래금액 및 거래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비율(B/A)		금액(B)	비율(B/A)
주식	124	0	0.03	15	0	0.03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450	0	0.04	865	0	0.00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10,561			10,825		
합계	11,136	0	0.00	11,705	0	0.00

※ 주1)~주3)에 기재된 수치는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른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7기 (2025.03.06)		제6기 (2024.03.06)		제5기 (2023.03.0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0		0		0
운 용 자 산		0		0		0
현금및예치금		23,784,770		24,315,709		23,386,59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3,784,770		24,315,709		23,386,595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2,404,415,373		2,157,035,397		1,741,095,789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2,404,415,373		2,157,035,397		1,741,095,789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관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작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타자산		8,978		13,979		11,48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2,238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8,978		11,741		11,482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2,428,209,121		2,181,365,085		1,764,493,866
부 채		0		0		0
운용부채		0		0		0
1. 옵션매도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428,556		2,128,862		1,889,419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4,476		0	
4. 수수료미지급금	2,428,556		2,124,386		1,889,419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0		0		0	
부 채 총 계		2,428,556		2,128,862		1,889,419
자 본		0		0		0
1. 원본	2,280,216,366		2,100,725,008		1,814,537,685	
2. 이월잉여금	145,564,199		78,513,453		-51,933,238	
(발행좌수 당기 : 2,280,216,366 좌	이익잉여금	139,462,671		96,930,963		-62,945,223
전기 : 2,100,725,008 좌	수익조정금	6,101,528		-18,417,510		11,011,985
전전기 : 1,814,537,685 좌)						
(기준가격 당기 : 1,071.04 원						
전기 : 1,048.78 원						
전전기 : 978.04 원)						
자 본 총 계		2,425,780,565		2,179,236,223		1,762,604,44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428,209,121		2,181,365,085		1,764,493,866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7기 (2024.03.07 ~ 2025.03.06) 금 액		제6기 (2023.03.07 ~ 2024.03.06) 금 액		제5기 (2022.03.07 ~ 2023.03.06) 금 액	
운 용 수 익		130,709,124		134,382,589		-156,986,788
1. 투자수익		630,461		662,548		473,930
1. 이 자 수 익	630,461		662,548		473,930	
2. 배당금 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0		0		0	
4. 임대료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42,274,281		166,575,567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142,274,281		166,575,567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이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5,276,319		63,244,593		314,550,65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25,276,319		63,244,593		314,550,65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대손상각비	0		0		0	
8.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9,362,698		8,044,351		7,998,437
1. 운용수수료	3,284,656		2,770,169		2,703,104	
2. 판매수수료	5,050,676		4,405,701		4,448,806	
3. 수탁수수료	656,531		553,774		540,271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수수료	0		0		0	
6. 기 타 비 용	370,835		314,707		306,256	
당기순(손실)이익		121,346,426		126,338,238		-164,985,225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53		60		-9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3.07 ~ 2025.03.06	0	0	0	0	0	0	0	0
2023.03.07 ~ 2024.03.06	0	0	0	0	0	0	0	0
2022.03.07 ~ 2023.03.06	0	0	0	0	0	0	0	0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3.07 ~ 2025.03.06	1	1	0	0	0	0	1	1
2023.03.07 ~ 2024.03.06	1	1	0	0	0	0	1	1
2022.03.07 ~ 2023.03.06	1	1	0	0	0	0	1	1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3.07 ~ 2025.03.06	0	1	0	0	0	0	0	1
2023.03.07 ~ 2024.03.06	1	1	0	0	0	0	0	1
2022.03.07 ~ 2023.03.06	0	0	0	0	0	0	1	1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3.07 ~ 2025.03.06	4	4	0	0	0	0	4	4
2023.03.07 ~ 2024.03.06	6	5	0	0	2	2	4	4
2022.03.07 ~ 2023.03.06	5	5	1	1	0	0	6	5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3.07 ~ 2025.03.06	15	16	8	8	6	6	17	18
2023.03.07 ~ 2024.03.06	11	10	7	7	3	3	15	16
2022.03.07 ~ 2023.03.06	12	12	3	3	4	4	11	10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운용실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준일: 2025년 03월 07일, 단위: %)

종류(클래스)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5.75	6.19	1.10	1.05	1.96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5.93	6.37	1.28	1.23	2.13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5.69	6.13	1.05	1.00	1.98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5.91	6.35	1.26	1.21	2.20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6.08	6.51	1.42	1.36	2.34
수익률 변동성		4.00	4.04	5.05	5.72	5.19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 각 클래스별 설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각 클래스별 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일에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클래스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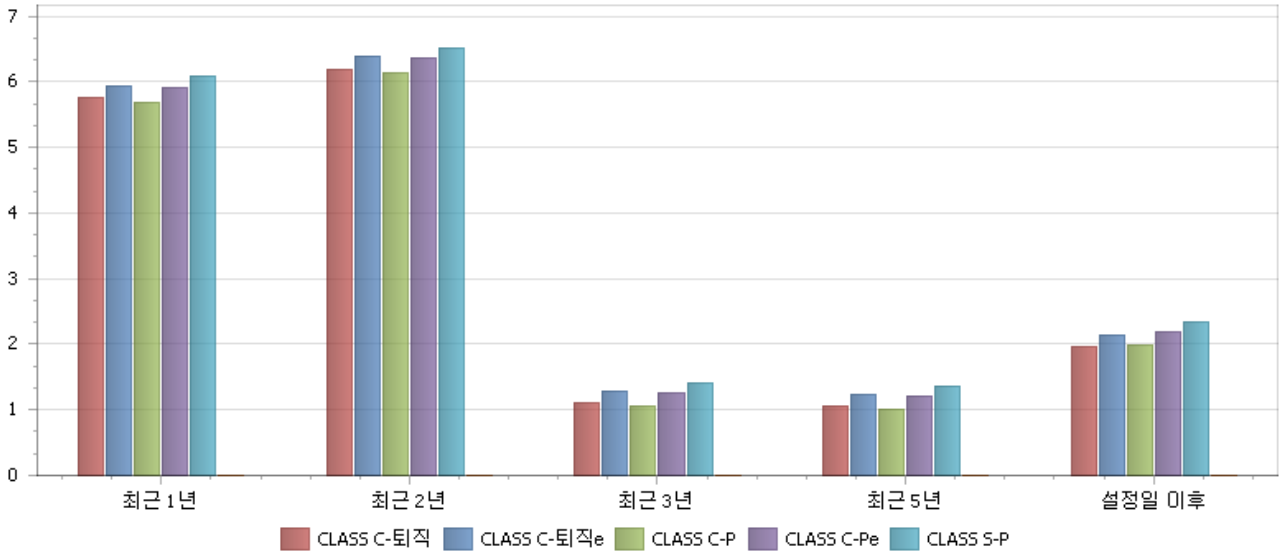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준일: 2025년 03월 07일, 단위: %)

종류(클래스)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5.75	6.66	-8.46	-1.47	3.46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5.93	6.85	-8.29	-1.30	3.65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5.69	6.61	-8.50	-1.52	3.41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5.91	6.83	-8.31	-1.31	3.64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6.08	6.98	-8.18	-1.17	3.78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기준일에 설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클래스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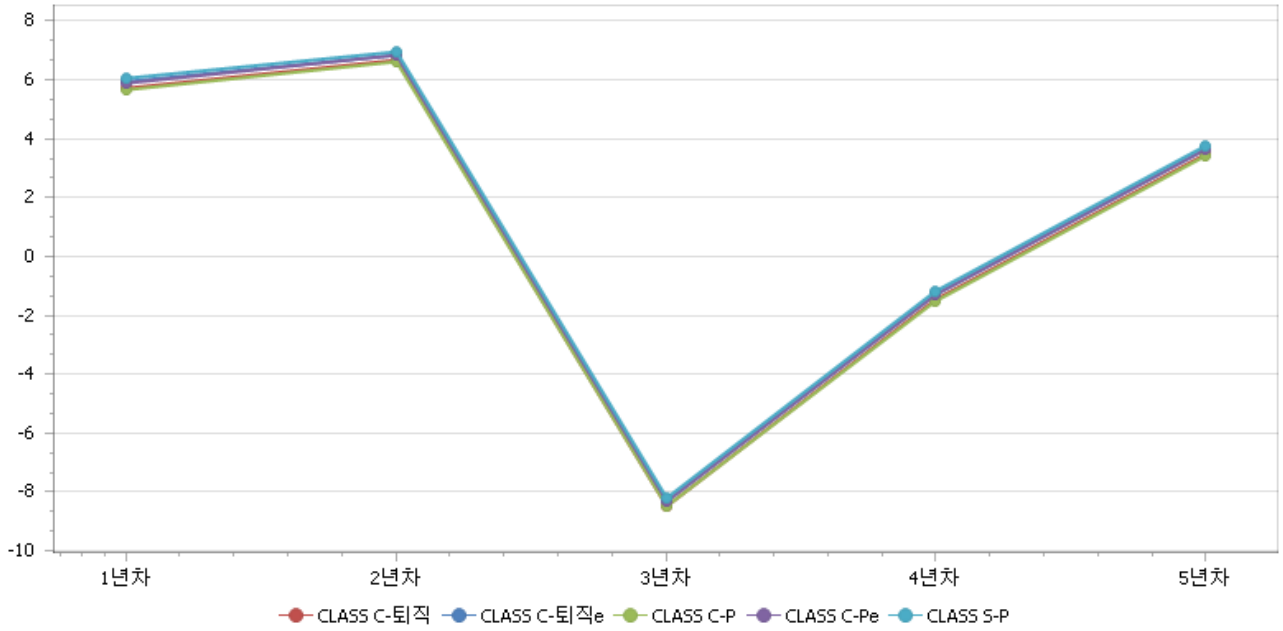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단위: 억원, %, 기준일: 2025년 03월 07일)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6	0	0	0	0	0	1	0	7
	(0.00)	(0.00)	(0.00)	(85.83)	(0.00)	(0.00)	(0.00)	(0.00)	(0.00)	(14.17)	(0.00)	(100.00)
USD	0	0	0	17	0	0	0	0	0	0	0	17
	(0.00)	(0.00)	(0.00)	(99.65)	(0.00)	(0.10)	(0.00)	(0.00)	(0.00)	(0.24)	(0.00)	(100.00)
합계	0	0	0	23	0	0	0	0	0	1	0	24
	(0.00)	(0.00)	(0.00)	(95.44)	(0.00)	(0.07)	(0.00)	(0.00)	(0.00)	(4.49)	(0.00)	(100.00)

※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 어음에는 CD를 포함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별 종목을 해당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여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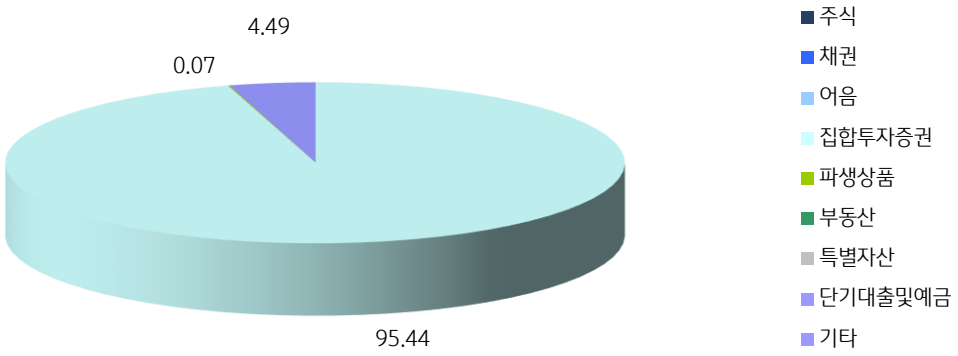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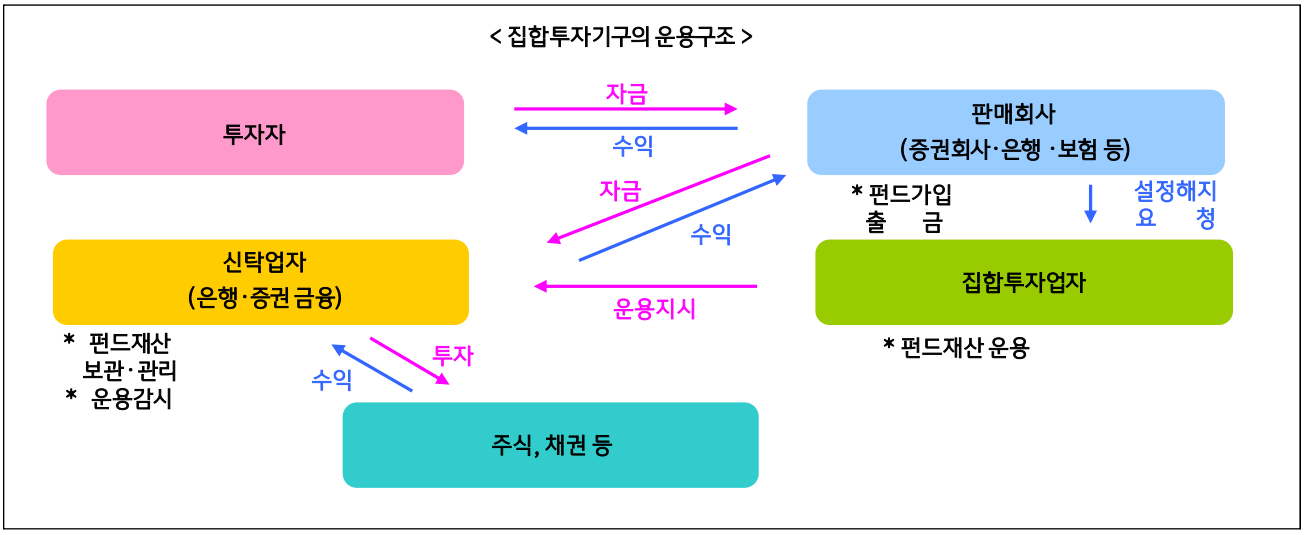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B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167-8200
주요 연혁	1988.04.28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에서 'KB자산운용㈜'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국민은행 → ㈜KB금융지주)
자본금	38,337,750,000원
주요주주	㈜KB금융지주 100%
투자신탁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케이비펀드파트너스(계열회사)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4)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37기	제36기
기 간	2024.12.31	2023.12.31
현금 및 예치금	39,012,883,353	38,933,936,18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90,757,945,462	260,215,813,6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71,510,606	545,347,032
관계기업투자주식	7,145,699,529	4,149,585,989
파생상품자산	5,099,715	332,043,870
대출채권	4,210,000,000	3,920,500,000
유형자산	15,251,040,466	18,406,120,618
기타금융자산	39,001,686,539	37,515,303,438
이연법인세자산	7,913,422,412	4,582,662,827
기타자산	11,172,971,073	9,318,136,104
자산총계	**414,942,259,155**	**377,919,449,718**
예수부채	13,709,000,000	11,573,142,857
파생상품부채	996,039,181	15,440,502
기타금융부채	58,819,535,406	69,580,135,760
충당부채	1,497,513,520	1,239,500,102
순확정급여부채	165,210,964	248,473,081
기타부채	45,036,929,511	26,989,165,775
부채총계	**120,224,228,582**	**109,645,858,077**
지배기업주주지분	294,383,401,930	268,273,591,641
자본금	38,337,750,000	38,337,750,000
자본잉여금	-1,417,274,031	245,566,0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21,913,792	-350,647,173
이익잉여금	256,541,012,169	230,040,922,776
비지배지분	334,628,643	-
자본총계	**294,718,030,573**	**268,273,591,641**
부채와 자본총계	**414,942,259,155**	**377,919,449,718**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37기	제36기
기 간	2024.01.01~2024.12.31	2023.01.01~2023.12.31
영업수익	246,183,703,573	204,201,520,573
영업비용	156,556,186,136	119,997,408,077
영업이익	89,627,517,437	84,204,112,496
영업외수익	739,824,874	428,606,617
영업외비용	2,219,072,565	2,483,620,51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8,148,269,746	82,149,098,598
법인세비용	21,776,039,885	20,624,213,266
당기순이익	66,372,229,861	61,524,885,332
기타포괄이익	1,284,434,223	231,392,683
총포괄이익	67,656,664,084	61,756,278,015

라. 운용자산 규모

(2025년 03월 07일 현재, 단위: 억좌)

투자신탁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수탁고	94,626	16,983	160,226	43,069	55,013	67,047	165,586	26,595	183,841	812,98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신탁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전화번호	☎ 1599-5000/1588-5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나. 주요 업무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케이비펀드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전화번호	☎ 02-2073-0595
인터넷 홈페이지	www.kbfps.com

나. 주요 업무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전화번호	☎ 02-3215-1450	☎ 02-399-3350	☎ 02-398-3900	☎ 02-721-5300
인터넷 홈페이지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서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5)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1)~4) 내용 중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은 “발행된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봅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열람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1]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체[1]: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2)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매일경제신문(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경향신문 포함)에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방안]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2)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운용전략 등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또는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가 '임의해지',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및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하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투자신탁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세제적격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3)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나)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 개 회 사 의 선 정 기 준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통제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을 공유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을 통해 고유재산을 투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209조 제1호 가 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의무(책임) 투자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을 통한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최초설정일에 2억원 투자하였으나, 3년 경과 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나. 가 목 이외의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추가투자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고유재산 추가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KB자산운용㈜
- 투자목적: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적정 운용규모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 추구
- 투자시기: 최초설정일(2018년 03월 06일)/2021년 03월 10일
- 투자금액: 18억원/20억원
- 투자기간 및 회수계획: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또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회수될 예정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